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4. 16(금) 10:00

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77호
- 나. 제 출 자 : 김용술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2. 제안이유

코로나19로 인한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지원 및 증가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근거 규정 정비(제1조, 제2조제1호)
-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
 - 1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
 - 2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 : 2021. 4. 5. ~ 2021. 4. 12.
 - 2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지원 및 증가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- 근거 규정 정비(제1조, 제2조제1호)
-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금천구 소상공인의 지원과 증가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그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소상공인기본법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23호, 2020. 12. 08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23호, 2020. 12. 08., 일부개정]

제12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
1. 재창업 지원
2.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
3.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31.>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31.>

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12. 31.>